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. 10. 20 선고 2020가단251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0. 20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11. 4.부터 피고 B는 2020. 7. 17.까지, 피고 C은 2020. 6. 11.까지 각 연 6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(무변론 판결)

판사최두호

별지